#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23 발의연월일: 2025. 1. 3.

발 의 자:이해민・이훈기・강훈식

임미애 · 김우영 · 이정헌

박해철 · 황운하 · 김준형

김재원 · 서미화 · 차규근

박은정 · 서왕진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국내외전문가의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물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.

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하지만,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구역 밖에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 등 항공장애물 관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함.

이에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'취약성'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 이 「국제민간항공조약」 및 그 부속서(附屬書)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 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·관리하도록 함.

또한,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함(안 제2조제21호 및 제34조의3 신설 등).

##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"취약성"이란 물체가 정해진 최대 하중이 실릴 때까지는 그 구조적 통합성과 견고성을 유지하다가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 파손, 변형, 또는 구부러지는 성질을 말한다.

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3(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) ① 항공기의 지 상이동으로 사용되는 영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 하기 위하여 규정된 표면 위를 침범하는 모든 고정·이동 물체 또 는 그 일부는 장애물로 간주된다.
  - ② 항행보조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위치하여야 하는 고정·이동 물체 또는 그일부를 제외한 장비 또는 설치물은 허용 장애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은 「국제민간항 공조약」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(附屬書)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

건을 부합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제3항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의 종류, 위치선정 및 설치, 관리, 조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20. (생 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1. "취약성"이란 물체가 정해
	진 최대 하중이 실릴 때까지
	는 그 구조적 통합성과 견고
	성을 유지하다가 그 이상의
	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
	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
	파손, 변형, 또는 구부러지는
	<u>성질을 말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34조의3(장애물이 될 수 있는
	공항 장비 및 설치물) ① 항공
	기의 지상이동으로 사용되는
	영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
	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
	정된 표면 위를 침범하는 모든
	고정・이동 물체 또는 그 일부
	는 장애물로 간주된다.
	② 항행보조기능 등을 수행하
	기 위하여 반드시 장애물이 될
	수밖에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
	나 위치하여야 하는 고정・이
	동 물체 또는 그 일부를 제외

한 장비 또는 설치물은 허용장애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은 「국제 민간항공조약」 및 같은 조약 의 부속서(附屬書)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부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행안 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 물은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제 3항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의 종류, 위치선정 및 설치, 관리, 조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